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2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김태년 · 송기헌 · 백혜련

진선미・김영배・허 영

서영석 · 박균택 · 이학영

조인철 · 홍기원 · 신영대

전용기 • 박희승 • 김영진

김 윤 • 권칠승 • 임호선

송재봉·김준형·복기왕

전현희 · 강준현 · 오세희

최기상 · 김한규 · 김동아

양부남 • 허종식 • 정태호

이재관 • 권향엽 • 장철민

안도걸 · 김성환 · 주호영

조승래 • 박지혜 • 김교흥

진성준 · 정일영 · 박홍근

박수현 · 김원이 · 정준호

허성무 · 김성원 · 추미애

의원(48인)

제안이유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반도체·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보호조치, 특화단지 지정 및 기반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간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기술보호조치 등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적 성격이 강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미래첨단기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 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반도체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분야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둠(안 제8조).
- 마. 정부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및 기반시설의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 9조).
-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 도체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반도체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인·허가권자에게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 아. 반도체 특구 관리주체 등은 첨단 기술 분야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 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4조).
-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안 제16

조).

법률 제 호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반도체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반도체기술"이란 반도체 재료 및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 설계, 응용 등 모든 공정에 연관된 기술을 말한다.
- 2. "반도체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반도체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 한다.
- 3. "반도체사업자"란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4. "반도체 특구"란 반도체기술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 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5. "반도체산업 기반시설"이란 반도체 특구에 전력·용수를 공급하고 반도체 특구에서 배출하는 폐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필 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반도체사업자는 혁신적인 반도체산업기술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제5조(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 분야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 2. 반도체산업 분야의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산업 분야의 세계 교역 및 국내 수급 동향
- 5. 반도체산업 분야의 공급망 분석 및 보고계획
- 6. 반도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계획
- 7. 반도체산업 분야의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 8. 반도체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9. 반도체산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 10.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11.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 12.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국가반도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8조에 따른 국가반도체위원회에 전년도의 시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분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8조(국가반도체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2. 반도체산업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 3. 제10조에 따른 반도체 특구의 조성·지정·해제·지원 및 특구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12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산업 육성 관련 특 례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의 개발 및 관련 품목의 공급 대책에 관한 사항
 - 7. 반도체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 8.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9. 반도체 분야 발전 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조정 및 조율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한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8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 견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3.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 4.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 5.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 6.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 7.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사업자의 반도체기술 확보 및 제조 능력 확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세제 혜택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시제품 생산 및 정밀 검사

- 2. 클린룸을 포함하여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고가의 제조 장비 도입
- 3.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설비
- 4.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0조(반도체 특구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반도체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
 - 2.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반도체 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반도체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범위
 - 2. 반도체 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3. 반도체 특구 개발 및 발전 계획

- 4. 반도체 특구 개발 및 발전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5. 반도체 특구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 와 설비 확충 방안
- 6. 그 밖에 반도체 특구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도체 특구 지정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도체 특구 계획을 승인하고 반도체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 략산업 특화단지와 중복하여 반도체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 2. 반도체 특구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 3.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 4. 그 밖에 반도체 특구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도체 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⑤ 반도체 특구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 이 경우 반도체 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1. 반도체 특구가 산업단지에 지정된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관리권 자
- 2. 반도체 특구가 산업단지 외 지역에 지정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의 관할 시·도지사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 특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반도체 특구의 변경 및 해제) ① 반도체 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반도체 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 특구계획 및 반도체 특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 특구의 지정 사유가 소멸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도체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도체 특구의 변경 또는 해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 지 아니하고 반도체 특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 특구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2조(반도체 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반도체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 3. 반도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교육시설·주 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반도체 특구 내 설비투자
 -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 술단지의 조성사업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 9. 그 밖에 첨단 반도체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사업 등 반도체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비용을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 1. 용수공급시설(용수관로, 가압장, 정수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 2. 전기공급시설(송전선로, 변전소, 변환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 4. 간선도로
- 5.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 6.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
- 7. 그 밖에 반도체 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 및 반도체 특구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 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도체 특구에 설치 또는 입주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지 식산업센터,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말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사업,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반도체 특구를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절차에 대하여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반도체산업 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 요비용
- 2. 반도체 특구 내 반도체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전략산업 등의 영위 를 위한 생산시설, 설비 등의 설치·구축·취득 비용
- 3. 반도체 특구 내 반도체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반도체산업 등의 영 위를 위한 반도체 특구 내 토지 등 취득 비용
- 제13조(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반도체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구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 의제 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 5. 그 밖에 반도체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등의 처리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인·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⑥ 그 밖에 인·허가 등의 신속 처리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반도체 특구 관리주체와 반도체 특구 내의 지식산업센터,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은 첨단 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

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 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 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 할 수 있다.
 - 1. 제12조에 따른 반도체 특구 지원 사업
 - 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

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반도체산업 지원 기금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 체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 5.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반도체기술에 관한 연구·학술 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반도체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 2. 반도체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 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5.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6.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사업
- 7.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필요한 해외 기업 유치사업
- 8. 반도체산업 기반시설이 설치된 시·군 등을 위한 상생 협력 사업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다른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를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기반 및생산 시설 조성·운영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 제18조(반도체 전문인력양성 지원 등)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반도체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반도체 특구 내 설립 및 반도체기술 과 관련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반도체 특구로 이전(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학교의 신설 및 증설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 3.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
 - 4.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 · 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 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

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한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반도체산업 관련 계약학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또는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반도체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도체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

- 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 7.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이전된 대학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수도권 이외의 특성화대학 등은 적합한 교육환경(시설 및 교원 등)이 확충되면, 해당 과정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반도체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고등교육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 제21조(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반도체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

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 2. 입주국내복귀기업
- 3. 반도체기술 및 반도체제품에 투자하는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
- 4.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반도체 특구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에 따

른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증설을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기 반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